

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(2023.06.01.부 적용)

2023.06.01.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(확진자 7일 격리 의무 → 5일 격리 권고)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.

1. 출석인정 대상: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, 자가격리자, 입국지연자, 증상호소자

2. 출석인정 기간

- **확진자: 5일**

- **자가격리자: 5일**

- 입국지연자: 입국지연 기간

- 증상호소자: 증상 치료 기간(증상 발현시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등교 가능)

※ **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국가의 격리는 5일 권고사항으로 변경됐으나 교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본교는 5일 격리를 의무로 하며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격리기간 동안 등교 불가**

※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학과 상담을 통해 휴학을 권고합니다.

3. 출석인정 승인절차

-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털->전자출석부->출결변경신청 메뉴 신청

(결석 전 해당 수업 담당 교원/조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결석 사유에 대한 소통 필요)

- 증빙이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 승인 후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됨

4. 출석인정 증빙서류

- 확진자: '확진'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

- 자가격리자: '확진'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

- 입국지연자: 출입국 기록 확인서 1부, 격리 통지서 1부

- 증상호소자: '음성'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 1부

5. 관련 문의: 교무팀 성적 담당자(031-219-2018, cmh@ajou.ac.kr)

6. FAQ

Q.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격리가 권고로 바뀌었는데 반드시 격리를 해야하나요? 학교에 등교할 수 없나요?

A.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격리가 권고로 바뀌었지만 아직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지 않았고 교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 이에 **국가에서 지정한 5일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가 불가능**하며 해당 기간 출석은 모두 인정되오니 확진자 접촉 및 격리 판정 시 즉시 등교를 멈춰 주시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Q. '확진' 혹은 '음성' 진단결과가 명시된 관련 서류는 어떤걸 의미하나요?

A.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병원의 소견서, 진단서, 확인서 등 제반의 서류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.

Q. 비대면 수업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?

A. 대면/비대면 수업 관계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하나,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비대면 수업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< 교 무 처 >